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5
----------	-------

제출년월일 : 2003. 9. 28.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 의료지원 및 교육·취업보호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1
입 안 자	시 세 과 장	석 명 범 ☎ 940-4220
	세 정 담 당	이 용 석 ☎ 940-4218
	담 당 자	박 세 용 ☎ 940-421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